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2012. 3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2012. 3

임순희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조정아 (북한연구센터 연구위원)

이규창 (북한인권연구센터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I. 문제 제기	1
II. 북한의 아동교육	3
1. 교육 목표	3
2. 기본 학제	4
3. 주요 교육 내용	5
III. 아동의 교육권 실태	7
1. 교육 선택권의 제약	7
2. 과도한 노동 수행	8
3. 양성·출신성분에 따른 선별적 진학	10
4. 무상교육의 비정상화	11
IV. 보통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특징	13
1. 법령 제정의 의의	13
2. 주요 내용 및 특징	16
V. 아동권협약에 비추어 본 보통교육법 평가	21
VI. 정책적 고려사항	23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25

표 목 차

<표 1> 교육법과 보통교육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비교 15

I. 문제 제기

-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에는 아동의 보호 및 지원받을 권리가 규정되어 있음.
 -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세계인권선언 제25조 제2항).
 - 아동¹⁾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고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문(前文)).
 - 모든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또는 출생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가족, 사회 및 국가에 대하여 미성년자로서의 지위로 인하여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짐(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²⁾ 제24조).

- 북한당국도 창건 초기 이래로 어린이들은 나라의 미래이자 나라의 ‘왕’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왔으며 사회주의헌법, 교육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장애인보호법, 가족법 등의 채택을 통하여 아동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함.³⁾

1)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조는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 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북한 1981. 9. 14 가입.

- 북한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협약)에 가입 (1990.9.21)한 후 세 차례(1996.2, 2002.5, 2007.12)에 걸쳐 아동권 협약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
-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 북한의 아동들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보호 및 지원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선 촉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북한 아동의 권리에 대한 우려 및 개선 촉구는 주로 식량, 건강, 신체적·정신적 보호, 사법권 등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교육을 받을 권리’(이하 교육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편임.
- 이 보고서에서는 교육권을 중심으로 하여 북한의 아동권리 실태를 살펴보고 2011년 1월 19일 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이하 보통교육법)⁴⁾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함.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2010.3), p. 19.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355호.

II. 북한의 아동교육

1. 교육 목표

- 북한 교육의 목적은 사회주의 체제 유지에 필요한 ‘공산주의적 인간’을 양성하는 것임.
 - ‘사회주의 헌법’ 제43조에서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다”고 교육의 목적을 설명

- ‘교육법’에서는 교육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제3조)이라고 명시함으로써 교육의 목적을 덕육, 지육, 체육이라는 보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음.
 - ‘건전한 사상의식’이란 보편적 윤리를 의미하기보다는 사회주의 혁명사상과 수령과 당에 대한 충실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본주의 국가의 교육목적과는 차이를 지님.

- 북한에서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란 북한 사회가 지향하는 정치적 신념과 사상의식을 체화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일반지식과 더불어 직업분야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체득하고, 건강한 체력을 갖춘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음.

2. 기본 학제

- 기본 학제는 4-6-4제로, 4년간의 초등교육, 6년간의 중등교육, 4~6년간의 고등교육으로 구성됨.
 - 초등교육기관은 소학교,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라 불리며, 취학전교육기관으로 낮은반 1년, 높은반 1년 과정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이 있음.
- 소학교 취학 연령은 만 6세이고, 취학전교육 1년과 초·중등교육이 11년제 의무교육으로 진행됨.
 -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가 설치, 운영하며 사립교육기관은 존재하지 않음.
- 북한은 해방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교육기회 및 의무교육의 확대를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해왔으며, 무상의무교육은 주민들에게 북한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는 주요 정책 중의 하나로 기능해왔음.
 - 1956년에 4년제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하여 1975년에는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
-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영재교육기관과 특수계층자녀를 위한 교육기관도 설치, 운영되고 있음.
 - 대표적인 영재교육기관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영재 양성을 위한 평양제1중학교와 도·시별 제1중학교, 외국어 특기자를 위한 중등교육기관인 외국어학원, 예·체능계 특수교육기관으로 금성학원, 평양음악학원, 남포중앙체육학원 등이 있음.

3. 주요 교육 내용

- 세 가지 주요한 교육 내용은 사상의식, 과학기술지식, 체력임.
 - 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상의식으로, 주체사상,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 교양, 공산주의 교양,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 낙관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 사회주의적 준법정신 등으로 구성
 -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선진과학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동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서 사회주의 사회의 성원으로서 누구나 다 알아야 할 필수적인 지식인 일반지식과,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자가 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
 - 체육교육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노동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육체적 준비를 갖추는 것을 의미

- 소학교 재학 4년 동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니 어린시절,’ 국어, 외국어, 사회주의도덕, 수학, 자연, 음악, 체육, 도화공작, 컴퓨터, 위생 등 13개 교과를 가르침.
 - 김일성 가계 관련 교과가 주를 이루는 정치사상 교과 수업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교양을 목적으로 하며 전체 수업시간수의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
 - 외국어와 컴퓨터 교과는 2008년 9월에 신설되었으며, 소학교 3학년 때부터 가르침.

- 중학교에서는 재학 4년 동안 정치사상교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역사,’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영도자 김일정원수님 혁명역사,’ ‘항일의 여성영웅 김정숙어머님 혁명역사,’ ‘현행당정책,’ 어문·사회과학 교과로 국어, 문학, 한문, 외국어, 역사, 지리, ‘사회주의 도덕과 법,’ 자연과학 교과로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예체능 및 기타 교과로 체육, 음악, 미술, 제도, 컴퓨터 과목과 1주간의 실습교과 등 총 23개 교과를 가르치고 있음.
 - 교과영역별 수업시간수를 보면 자연과학 교과의 비중이 40% 정도로 가장 높고, 어문·사회·인문과학 교과의 비중은 40%에 약간 못 미치며, 정치사상교과와 예체능·기술교과가 10%를 약간 상회함.

- 북한에서는 중학교에서도 계열이 분리되지 않으며, 영재학교 학생들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과목을 동일한 시간 배움.
 - 다만, 2001년부터 광업·기계·임업·식료·피복·약전 등의 교과목 중 지역의 특성을 살려 선택할 수 있는 선택과목제 도입

- 교과 수업 이외에 모든 중학생들은 농번기에 저학년은 연간 4주, 고학년은 8주간 생산노동을 통한 농촌지원활동을 해야 하며, 중학교 5학년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에 가입함과 동시에 붉은청년근위대원이 되어 군사훈련을 받음.

Ⅲ. 아동의 교육권 실태

1. 교육 선택권의 제약

- 교육은 인격의 완성과 인격존엄의식의 온전한 개발을 지향해야 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⁵⁾ 제13조 제1항), 아동 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지향해야 함(아동권협약 제29조 제1항).
- 그러나 북한에서는 당과 국가가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유일한 주체인 바, 교육을 받는 아동에게 있어 교육 선택권은 매우 제한적임.
-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정치사상교육이며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인격함양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
 - 북한은 보통교육법 제40조에서도 ‘보통교육기관’은 학생들에 대해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그 외의 일반과목 및 기초과학 기술과목에 대한 교육, 외국어, 예능, 체육과목에 대한 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고 명시
 - 교육법 제29조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있게 하고 체육, 예능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라고 명시
- 소학교와 중학교의 교과과정에서는 공산주의 사상교육과 함께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우상화를 위한 교육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5) 북한 1981. 9. 14 가입.

-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2011.12.17)함에 따라 언론매체를 통한 김정은의 우상화가 한층 더 본격화되고 있는 바, 학교 교과과정에서도 김정은 우상화 관련 교육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또한 북한의 아동들은 ‘조선소년단’ 생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생활 등 일상적인 의무적 조직생활을 해야 하는 바, 이로 인해 교육에 의한 보편적 인격의 완성을 방해받으며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에도 지장을 초래함.
 - 북한 아동들의 학습활동은 집단화·획일화
- 북한의 아동교육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동에 대한 의무적 군사훈련임.
 - 중학교 5학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을 하는 바, 학생들은 3~4주 합숙 훈련을 하면서 총 쏘기, 군인의 기본 자세, 공격 자세, 방어 자세 등을 배우며 끝 무렵에는 실탄으로 총 쏘기 실습을 하기도 함.⁶⁾
 - 군부대가 아닌 근위대 야영훈련소 등의 군사 교육기관에 가서 훈련하며 여학생들도 참가

2. 과도한 노동 수행

- 아동권협약에서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라고 규정함(제32조).

6)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 북한 사회주의헌법(제31조)과 사회주의노동법(제15조)에서도 16세 노동연령과 노동연령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노동금지를 규정
-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의 아동들은 실천투쟁 속에서의 혁명적 단련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계획에 따라 농촌, 또는 사회주의건설 현장에 동원되고 있음.
 - 교육과 실천의 결합 원칙 구현, 노동애호정신의 구현이라는 명분 아래 법제화된 아동들의 ‘의무노동’은 노력동원을 극대화하는데에 적극 활용
- 2010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따르면 최근에도 아동들은 과도한 노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학업에 지장을 주는 정도임.
 - 소학교 학생들은 작업장에 동원되어 돌 나르기, 흙 담아 나르기 등을 하며, 농사철에는 3학년 이상부터 매일 1~2시간씩 농촌에 노력동원⁷⁾
 - 중학교 재학 중에 노력동원, 농촌지원 등 “셀 수 없을 만큼 지겹도록” 거의 매일 노력동원을 나갔으며 공부에 “상당히 많이 방해”⁸⁾
 - 중학교 때에 농촌 지원하는 것은 농업 관련 과목으로 되어 있으며 1년에 한 달씩 하고, 매일 과제를 받아 무조건 해내야 하므로 건강을 해칠 정도의 노동수행⁹⁾
 - 중학교 4~6학년생은 봄, 가을에 한 번씩 학업을 중단하고 한 달씩 농촌지원¹⁰⁾

7) 북한이탈주민 ○○○, 2011년 5월 12일, 서울에서 면접.

8)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1일, 서울에서 면접.

9)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0일, 서울에서 면접.

- 1년에 7개월 정도를 거의 매일 오후마다 동원되어 작업하며, 한 달 동안은 농촌지원을 나가 합숙생활을 하고 농촌지원이 없을 때에는 공사장에서 돌 나르기, 거리 청소 등의 작업에 동원¹¹⁾

3. 당성·출신성분에 따른 선별적 진학

- 아동권협약에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제28조 제1항).
 -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해 북한은 교육법에서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 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제48조)
- 북한의 아동들에게 있어 공교육은 ‘11년 무상의무교육제’에 따라 제도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으며,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중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부여함.
- 그러나 실제에 있어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은 공정한 실력 경쟁보다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출신성분과 당성(조직생활평가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음.
 - 대학에서 요구하는 인원을 중학교에서 추천할 때에 학생의 당성과 출신성분을 고려
 -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의 주요 대학과 교사를 양성, 배출해 내는 사범대학에서 당성과 출신성분에 높은 비중

10)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11) 북한이탈주민 ○○○, 2011년 4월 29일, 서울에서 면접.

- 그러나 1990년대 이래 경제난이 심화, 지속됨에 따라 대학진학에 있어 출신성분이나 당성보다는 공부실력, 부모의 권력배경, 경제력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특히 과학기술 계통의 대학에서는 실력이 우선
 - 최근에는 경제력이 대학진학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4. 무상교육의 비정상화

- 북한은 1975년 9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주장함.
 - 이와 관련하여 교육법에서는 “공민은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며(제12조), “모든 교육은 무료”(제16조)라고 명시
- 사실상 경제난 이전까지는 무상교육이 잘 이루어진 편이었다고 하나 1990년대 이래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무상교육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경제난 이후 교육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교복과 학용품 지급이 중단된 것은 물론이고 교과서조차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무상교육의 의미가 퇴색
 -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와 학용품을 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
 - 학용품을 비롯하여 학교 건축, 학교 건물 관리, 겨울철 땀감용 나무 등을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

- 또한 무상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함에 따라 학교에서 요구하는 부담금 때문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실례로, 양강도 혜산에서는 주로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이 세 부담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바, 학생들에게 학교 시설물 교체 및 수선, 교실 집기 마련 및 수선, 교과서 구입 등의 비용을 부담 지우기 때문¹²⁾

- 또한 평양과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지속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와 함께 장사를 다니거나 산밭에 나가 텃밭 농사를 짓는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북한당국은 여전히 모든 어린이들은 전반적으로 11년제 무상의무교육제 아래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완전한 기회가 주어지는 무료의무교육을 받으며 소학교 입학률은 100%이고, 진학률은 99.7%, 졸업률은 100%라고 주장하고 있으나,¹³⁾ 실제에 있어 북한의 아동들은 교육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12) 북한이탈주민 ○○○, 2011년 8월 17일, 서울에서 면접.

1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A)항에 의거, 제출된 국가보고서(2009.8.27),” 국가인권위원회, 『2009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우리정부, NGO, INGO 관련 자료집』 (2010.3), p. 19.

IV. 보통교육법 제정의 의의와 특징

1. 법령 제정의 의의

가. 보통교육 관련 별도 법령 마련

- ‘보통교육’¹⁴⁾과 고등교육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던 이전과는 달리 북한 당국은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에 관한 별도의 법령을 마련하게 되었음.
 - 기존 ‘교육법’¹⁵⁾은 소학교, 중학교 외에도 전문학교, 대학교, 박사원 등의 고등교육(우리의 대학교육)기관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제20조)
 - 보통교육법은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우리의 중·고등학교 교육)단계의 교육사업과 관련한 내용만을 규율(제3조, 제8조)
 - 북한은 2011년 12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7개 장, 68개 조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등교육법’을 제정(조선중앙통신, 2012.1.18)

- 이와 같은 법의 세분화는 법제 측면에서 발전된 일면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북한법과 남한법을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북한법은 남한법에 비해 수가 적고 규율내용도 포괄적이고 모호한 경우가 많음.

14) 보통교육이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일반교육”이며 “보통교육에는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속한다”(보통교육법 제3조).

15) 1999년 7월 14일 제정, 공포.

나. 사회주의교육제도의 공고화를 통한 인재양성

- ‘보통교육법’ 제정은 교육의 질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식경제형 강국건설’을 이루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음.
 - 2000년대 이후 북한은 국가발전전략의 일환으로 과학기술교육 부문에서의 집중적인 영재 발굴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을 시행하고 교육 제도의 부분적 개혁을 추진
 - ‘보통교육법’ 제정은 경제난 이후의 제한된 교육 자원과 예산을 가지고 인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정책의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

- 또한 ‘보통교육법’ 제정은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움’으로써 교육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축소시키고 사회주의적 교육제도를 공고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경제난 이후 사회주의 교육제도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 간의 교육 격차가 확대되고 사교육을 비롯한 비사회주의적 교육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보통교육법’ 제정은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법적 대응으로 해석

다. 기존 교육법의 보통교육 관련 내용 재확인 및 구체화

- 보통교육법은 7개 장, 53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1장 보통교육법의 기본, 제2장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제3장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제4장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제5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제6장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으로 편제

- 보통교육법은 전반적으로 기존 교육법의 규정들을 재확인하고 있음.
 - 무상의무교육과 교육일군 양성 및 교육조건보장 관련 규정들은 큰 틀에서 유지
- 동시에 교육법에 단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새로운 규정들을 신설하였음.
 - 육체적·지적 장애를 겪는 어린이의 취학 연령 유예 명시(제12조)
 - 보통교육기관에 유치원과 특수학교(장애자교육을 위한 맹·농아 학교), 특별학교(특정한 대상의 교육을 위한 학원)를 명시(제19조)
 - 학교 명칭을 정하는 것과 소학교, 중학교, 제1중학교, 특별학교(학원), 특수학교(맹·농아학교) 등의 각급 학교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제21조~제25조)

<표 1> 교육법과 보통교육법의 구성 및 주요내용 비교

	교육법	보통교육법	비 고
기본(사명, 원칙 등)	제1장에서 규율	제1장에서 규율	교육법은 고등교육까지 포괄
무상의무교육	제2장에서 규율	제2장에서 규율	공히 11년제 무상의무교육
교육기관 설립·운영	제3장에서 규율	제3장에서 규율	교육기관 구분과 운영을 구체화
교육일군(교원) 양성	제3장에서 규율	제4장에서 규율	자격기준 구체화, 자격급수 구분
교육내용과 방법	제4장에서 규율	제5장에서 규율	학급편성, 학급담임제, 분과 조직 등의 규정 신설, 학생실력평가, 수재교육 규정 신설
교육조건 보장	제5장에서 규율	제2장과 제6장에 분산되어 규율	보통교육법은 별도의 장을 두지 않은 점이 특이
교육사업 지도통제	제6장에서 규율	제6장에서 규율	교육후원기금 설립 규정을 명시하지 않음.

2.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인재 양성 강조

- 보통교육법은 법령 제정의 목적이 보통교육사업 개선과 함께 ‘새 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내는데 이바지’하는데 있다고 천명함(제1조).

-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어린이는 나이 또는 학년에 관계없이 조기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함(제11조).

- 기초과학기술과 외국어 교육을 강조하고 있음.
 - 교육법은 단순히 “과학기술교육을 깊이있게 하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어교육은 명시하지 않음(제29조).
 - 이에 비해 보통교육법은 “...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를 비롯한 기초과학기술과목에 대한 교육, 외국어...에 대한 교육을 옹계 결합시켜야 한다”고 규정(제40조)
 - 이와 함께 보통교육법은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교육 과학연구사업 강화 규정을 신설(제48조)

- 학생실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제43조), 수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였음(제43조, 제44조).
 - 기존 교육법은 “수재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주의교육의 중요요구”라는 원론적 내용만을 선언(제6조)
 - 이에 비해 보통교육법은 학업연한단축, 조기진급 또는 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제44조)

나. 교원 양성 강조

- 보통교육법은 교원 양성 원칙을 천명하고(제5조), 교원의 계획적 양성과 교원 수요의 원만한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제28조).
 - 기존 교육법은 교육일군 자격(제25조)과 교육일군 임무(제27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육일군 양성에 관한 규정은 없음.
- 보통교육법은 교원자격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격급수를 구분하고 있음(제30조, 제31조).
- 보통교육법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교원에 대한 재교육, 교수능력 제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제32조, 제33조).
- 교원의 자질과 교수방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집체적으로 협의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분과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제39조).

다. 교육조건 보장에 식량난·경제난 고려

- 보통교육법은 교원과 학생에게 식량공급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7조).
 - 이는 인재 양성 및 교원 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보통교육법의 취지와 일맥상통
 -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북한에서 식량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래 세대인 학생과 교원들에게만이라도 식량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겠다는 북한 당국의 절박함이 읽혀짐.

- 기존 교육법은 ‘우선적’이라는 표현없이 “국가는 학생들에게 교육단계별에 따르는 식량을 공급하며 …”라고 규정(제18조)

○ 교육기금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

- 교육법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교육사업을 위하여 교육후원기금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제50조)

- 이에 비해 보통교육법은 교육기금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 보통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제50조)

- 교육기금 규정의 배제는 북한의 경제난을 반영

라. 제1중학교 체제 개편

○ 제1중학교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1984년 평양에 처음 설립된 후 1999년에는 시·군·구역 단위까지 확대되었음.¹⁶⁾

- 보통교육법은 이를 중앙과 도 단위로 축소(제23조)

- 북한이탈주민 ○○○은 2011년에 군에 있는 제1중학교가 일반 중학교로 변경되었으며 제1중학교는 도에 하나씩만 있게 되었다고 증언¹⁷⁾하였는데 이는 보통교육법의 제정 시기와 일치

○ 제1중학교 체제 개편의 이유는 첫째, 제1중학교 운영의 부작용과 이로 인한 북한주민들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16) 통일연구원, 『2009 북한개요』 (서울: 통일연구원, 2009), p. 394;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11』 (서울: 통일교육원, 2011), p. 201.

17) 북한이탈주민 ○○○, 2012년 2월 21일, ○○에서 면접.

- 제1중학교와 일반중학교간 교육 격차 심화, 일반중학교 교육의 질 하락, 제1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사교육 성행 등 시·군·구역 제1중학교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
 - 북한 당국이 시·군 단위의 제1중학교를 없앤 이유는 제1중학교 학생들만 좋은 대학과 직장으로 가고 일반 중학교 출신은 그렇지 못해 일반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¹⁸⁾
- 둘째, 북한의 경제난에 따른 재정 악화로 인해 한정된 재원을 평양과도 단위의 제1중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보통교육법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제1중학교 학생들의 기숙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3조), 시·군 단위의 제1중학교 유지가 북한의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마. 교육 부문의 비사회주의적 현상에 대한 단속 강화

- 교육 부문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적시하고, 교육 관련자와 일반 주민이 이를 어겼을 경우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을 하도록 명시하였음(제52조, 제53조).
 - 교육 관련 금품 수수, 학교시설의 비교육적 유용, 학습과 무관한 학생 동원, 교과서 판매, 영리 목적의 개인교수행위 등 처벌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
- 이는 경제난 이후 무상 의무교육이 실질적으로 후퇴하고 학교교육의 질이 저하되면서 국가교육의 공백을 주민 개개인이 보완하는 과정에

18) 북한이탈주민 ○○○, 2012년 2월 21일, ○○에서 면접.

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사회주의적 교육 현상을 법적, 강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하고 사회주의적 교육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바. 남녀평등교육 명시

- 남학생과 여학생이 차별 없이 평등한 교육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남녀평등교육 원칙을 천명함(제37조).
- 이는 대외적으로 국제인권조약 준수와 남녀평등 및 여성인권 보호를 천명하려는 북한 당국의 의도로 풀이됨.
 - 북한이 당사국인 여성차별철폐협약¹⁹⁾은 당사국이 교육 분야에서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남녀평등의 기초위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제10조)
 - 북한은 천리마동상의 여성상 조각,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공포 65주년 기념행사, ‘여성권리보장법’ 제정(2010.12.22) 등 남녀평등 및 여성인권 신장을 지속적으로 선전²⁰⁾

19) 북한 2001. 2. 27 가입.

20) 김수암·김국신·이규창,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2011), pp. 21, 25.

V. 아동권협약에 비추어 본 보통교육법 평가

- 아동권협약은 초등교육의 의무실시와 무료 제공을 규정하고 있음(제28조 제1항 가).
 - 보통교육법은 명목상으로는 이를 반영하고 있음(제9조~제13조).
 - 그러나 실제로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 비용을 부담

- 아동권협약은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 발전 장려, 중등교육의 무료교육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제28조 제2항 나).
 - 보통교육법은 맹·농아학교 및 맹·농아 어린이에 대한 교육 및 생활조건 보장, 특정 대상을 위한 학원교육, 중등일반교육의 무료 실시 등의 규정을 통해 중등교육의 발전 장려와 무료교육 도입을 반영(제13조, 제15조, 제19조)
 - 장학금 지원의 규정을 통해 재정적 지원도 명목상으로는 반영(제14조)

- 아동권협약은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指導, Guidance)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8조 제1항 라).
 - 보통교육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 실제에 있어서도 북한의 아동들은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이용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

- 아동권협약은 학생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8조 제1항 마).
 - 보통교육법에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실제로는 농촌 지역 등 일부 지역에서 출석률이 현저히 낮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등에는 출석률이 100%에 가깝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공식적으로 출석률 증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음.
- 아동권협약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아동권 협약에 부합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8조 제2항), 아동의 인격 및 재능 계발 등을 아동교육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9조).
 - 보통교육법에는 학교 규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
 -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보다는 정치사상교육을 강조(제40조)
- 아동권협약은 문맹 퇴치에 기여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장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제28조 제3항).
 - 보통교육법은 “국가는 보통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킨다”고 규정함으로써 교육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반영(제7조)

VI. 정책적 고려사항

- 북한 당국의 보통교육법 제정은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첫째, 보통교육법 제정의 대외적·표면적 목적은 지속적인 법제 정비 성과를 홍보하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임.
 - 명목상으로는 아동권리협약상의 아동교육 관련 규정을 반영함으로써 인권 보호 및 국제협약 준수라는 대외 이미지 상승효과를 의도
 - 고등교육법의 제정에 앞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통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아동권리보호를 중시하고 있음을 과시
- 둘째, 보통교육법 제정의 대내적·실질적인 목적은 강성대국 건설에 필요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데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강성국가’로 표현수위를 낮추기는 하였지만 그 동안 강성대국 건설을 일관되게 주장
 - 특히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는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컴퓨터수치제어)와 정보기술·나노기술·생물공학과 같은 기초과학기술의 성과를 강조하고, 교육 부문에서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과제로 설정
- 그러나 보통교육법의 제정으로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의 여부는 미지수임.
 - 북한아동들의 교육권이 증진되기 위해서는 사회권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인권 신장, 특히 아동권 신장이 필요

- 북한의 경제난이 강성대국 건설 일군 양성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북한 아동의 교육권 증진 및 남북관계 발전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교육교류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역사, 예·체능 등 비정치적인 교육 및 문화교류는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
 - 독도영유권, 한일과거사 청산 등의 문제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같은 입장
- 북한 아동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 관련 용품 및 설비 지원이 필요한 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 균등, 접근에 대한 차등정책 등 북한 내 정책 변화가 필요

〈부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355호, 주체 100(2011)년 1월 19일

제1장 보통교육법의 기본

제1조(보통교육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은 무료의무교육의 실시와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교육교양사업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보통교육사업을 개선하고 새세대들을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보통교육사업의 발전원칙)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나가는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끊임없이 개선완성하여 보통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나가도록 한다.

제3조(보통교육의 정의,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실시)

보통교육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일반교육이다.

보통교육에는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이 속한다.

국가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모든 새 세대들이 로동할 나이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받도록 한다.

제4조(교육교양조건의 보장원칙)

학생들의 교육교양조건을 국가가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학교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학생도서관, 소년단야영소, 유치원 같은 교육교양시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운영을 바로하도록 한다.

제5조(교원양성원칙)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국가는 사범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보통교육부문의 유능한 교원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6조(보통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보통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것은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담보이다.

국가는 보통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보통교육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끊임없이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보통교육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보통교육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학교전교육과 초등교육, 중등교육단계의 교육사업과 관련한 질서를 규제한다.

보통교육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에 따른다.

제2장 무료의무교육의 실시

제9조(중등일반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은 누구나 다 중등일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령기에 있는 공민에 대하여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의무적으로 공부시킨다.

제10조(중등일반의무교육의 학제)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1년이며 학교전교육 1년과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으로 한다.

제11조(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 나이는 5살부터 16살까지이다.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졌을 경우에는 나이 또는 학년에 제한없이 교육을 앞당겨받을수 있다.

제12조(학령어린의 취학)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해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그러나 육체적 및 지적장

애를 받는 어린이를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취학나이를 늦출수 있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를 의 무적으로 학교에 보내야 한다.

제13조(무료교육)

중등일반교육은 무료이다.

학생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일체 교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보통교육기관은 학생이나 그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일체 요금을 받을수 없다.

제14조(장학금)

국가는 맹,聋아학교, 제1중학교, 학원의 정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

제15조(무의무탁자, 장애자의 교육 및 생활조건보장)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어린이의 맹,聋아같은 장애어린이에 대한 교육과 생활조건은 국가가 책임지고 돌봐준다.

제16조(교과서 및 교육기자재의 생산공급)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서, 과외도서 같은것을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전에 제때에 출판, 공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기자재와 실험설비, 교구비품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7조(식량과 학용품, 생활용품의 보장)

교원, 학생에게는 식량공급을 우선적으로 하며 학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낮은 값으로 보장한다.

제3장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제18조(보통교육기관의 설립, 운영기준의 제정)

보통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바로하는것은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은 보통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기준을 바로 정하고 엄격히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보통교육기관의 구분)

보통교육기관은 학업내용과 그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1년제학교전교육을 위한 유치원
2. 4년제초등교육을 위한 소학교
3. 6년제중등교육을 위한 중학교
4. 장애인교육을 위한 맹,聋아학교
5. 특정한 대상의 교육을 위한 학원

제20조(학교의 배치)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도시 및 마을건설계획, 학생수와 통학조건 같은것을 고려하여 보통교육부문의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치 하여야 한다.

학교건설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이 맡아 우선적으로 한다. 이 경우 교사, 실험실, 실습기지, 운동장, 수영장같은 교육시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

제21조(학교의 명칭)

소학교와 중학교의 명칭은 해당 지방인민위원회, 명, 룡아학교, 학원의 명칭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학교명칭을 고치려 할 경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 또는 해당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소학교, 중학교의 운영)

소학교와 중학교는 따로따로 운영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학생수와 통학거리를 고려하여 소학교와 중학교를 함께 운영하거나 분교를 따로 설치하여 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교육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제1중학교의 운영)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중앙과 도에 제1중학교를 내오고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수재교육을 주어야 한다.

제1중학교의 학생선발기준은 실력본위의 원칙에서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제1중학교 학생들의 기숙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학원의 운영)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특정한 대상들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학원을 내오고 그 운영을 바로하여야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학원관리운영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학원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필요한 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 해주어야 한다.

제25조(맹, 룡아학교의 운영)

맹, 룡아학교는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하는데 따라 필요한 지역에 배치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지방인민위원회는 맹, 룡아학교의 관리 운영을 바로 하며 학생들에 대한 학습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행정사업 및 교육환경개선)

보통교육기관은 교육행정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교육학적요구에 맞게 교육환경을 꾸리며 학교건물과 구획, 시설을 알뜰히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사와 실험실, 실습지 같은것을 주기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학교시설은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상버에 리용할수 없다.

제4장 보통교육일군의 양성

제27조(보통교육일군의 구분)

보통교육일군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직접 담당수행 하는 교원과 그를 지도하는 일군이 속한다.

보통교육일군은 해당하는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28조(교원양성)

국가는 중앙과 도에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내오고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도록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사범교육체계를 끊임없이 개선 강화하여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사범교육을 위한 학생선발과 졸업후 배치)

사범교육을 위한 학생선발과 사범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의 배치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30조(교원의 자격)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자격은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졸업하였거나 그와 같은 교육을 받은 대상으로서 정해진 기준에 도달한자에게 준다.

교원은 높은 교육실무적자질과 교육자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자질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교원자격급수)

보통교육부문의 교원자격급수는 교종별로 1,2,3,4,5 급으로 하며 급수판정주기는 3년으로 한다.

교원자격급수판정을 위하여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에 교원급수사정위원회를 둔다.

교원자격급수사정절차와 방법, 평가기준은 중앙교육지도기관이 정한다.

제32조(교원에 대한 재교육강습)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교원을 위한 재교육체계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종별, 과목별로 단기강습을 정상적으로 주어야 한다.

제33조(교수능력제고)

보통교육기관은 교수참관, 교수경연, 실험기구 및 교편물전시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교원들의 교수능력을 부단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교원의 책임과 역할)

교원은 앞날의 역군을 키워나가는 높은 긍지와 영예감을 지니고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적으로 교원들을 존경하고 우대하도록 한다.

제5장 교육교양사업의 조직

제35조(교육교양사업의 개선요구)

교육교양사업을 잘하는것은 보통교육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근본요구이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보통교육기관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맞게 교육내용을 바로 구성하고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제36조(교육강령에 따르는 교육교양사업조직)

보통교육기관은 중앙교육지도기관에서 내려보낸 교육강령에 따라 교육교양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은 교육강령을 제때에 작성, 시달하여야 한다.

제37조(학급편성)

보통교육기관은 일정한 수와 비율의 남녀학생들로 학급을 편성하

고 학급단위로 교육교양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차별없이 평등한 교육교양을 받는다.

제38조(학급담임제, 학과목담당제의 실시)

보통교육기관은 교육단계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학급담임제와 학과목담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등교육단계의 수업은 학급담임제로, 중등교육단계의 수업은 학과목담당제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9조(분과의 조직)

보통교육기관은 교원의 자질과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집체적으로 협의대책하기 위한 분과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소학교에는 학년을 단위로 하는 학년분과를, 중학교에는 학과목별로 학과목분과를 둔다.

제40조(정치사상교육, 일반지식교육, 체육, 예능교육)

보통교육기관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상과 도덕, 다방면적이며 깊은 지식,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국어문학, 역사, 지리같은 일반과목에 대한 교육과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컴퓨터를 비롯한 기초과학기술과목에 대한 교육, 외국어, 예능, 체육과목에 대한 교육을 옹계 결합시켜야 한다.

제41조(교육교양방법)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은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높일수 있도록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한다.

보통교육기관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이며 선진적인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제42조(교육강령의 의무적인 집행)

보통교육기관은 교육강령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학생들이 모든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게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교원, 학생들을 교육강령집행과 관련없는 일에 동원시킬수 없다.

제43조(학생의 실력평가)

보통교육기관은 실력평가를 위한 시험을 정해진데 따라 실속있게 조직하며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소화정도와 활용능력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는데서는 시험성적과 함께 평상시 학습정형도 고려하여야 한다.

시험조직을 무질서하게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발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4조(수재교육)

보통교육기관은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엄선하여 그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주어 그들이 기초과학부문과 전문부문의 유능한 인재로 자라나도록 하여야 한다.

실력이 특출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업년한을 단축하여 조기진급 또는 졸업시키거나 해당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시킬수 있다.

제45조(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국가는 학교교육을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시켜 학생들을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이있고 다방면적인 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쓸모있는 인재로 키우도록 한다.

보통교육기관은 청년동맹조직, 학부형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도덕과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제6장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보통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7조(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교육과학연구사업의 강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교육과학연구기관은 보통교육부문의 과학연구사업을 끊임없이 강화하여 보통교육발전을 위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원만히 풀며 교육사업을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조(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

보통교육부문에 필요한 자금은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의 예산으로 보장한다.

재정은행기관은 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을 정확히 편성할 수 없기 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보통교육부문의 재정예산은 류용할수 없다.

제50조(보통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원의 강화)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육중시기품을 철저히 세우고 보통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1조(보통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보통교육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 통제기관이 한다.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교육사업과 교육조건보 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2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 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하는 행정처벌을 준다.

1. 학교추천이나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하여 돈이나 물건을 받았을 경우
2. 학교배치 및 건설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거나 학교건물, 시설관 리를 잘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교사와 운동장 같은 학교시설을 교육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사업에 리용하여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4. 교원양성, 배치사업을 잘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5. 교육강령집행을 태공하였거나 학생들을 승인없이 학습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켰을 경우
6. 시험조직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아 학생들의 건강과 발육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학생교육에 필요한 교과서와 참고서 같은것을 제때에 보장하지 않아 교육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8. 교과서같은것을 비법적으로 출판, 인쇄하여 상적목적에 리용하였을 경우
9. 리기적인 목적으로 비법적인 개인교수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53조(형사적책임)

이 법 제5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통일정세분석 2012-02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전화 : 02-901-2525 팩스 : 02-901-2544
인쇄처	(주)세원문화사 전화 : 02-2265-1141
인쇄일	2012년 3월
발행일	2012년 3월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 900-4300(代)